

# 투자권유준칙

소관부서 : 준법감시팀  
제정 : 2009. 1. 19  
전면개정 : 2011. 1. 06  
개정 : 2014. 6. 1  
개정 : 2015. 12. 17  
개정 : 2016. 4. 1  
개정 : 2017. 1. 25  
개정 : 2021. 7. 9

## 제 1 편 총 칙

###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대출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②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9조제4항
- ③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

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 금소법 제18조 제1항
-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나.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 편 투자자 구분 등

### 제4조(방문 목적 확인)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일반·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이전에 해당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 금소법상 '전문금융소비자'란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소법 제2조에 따른 투자자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전문투자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포함된다.

- 대출성 상품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 법인, 경영여신업자,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특정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등이 포함한다.

☞ 금소법 제2조제9호 및 금소법시행령 제2조제10항

### 제 3 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에도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 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별지 3호]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⑤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가.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나.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 제7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않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해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 목적·재산상황·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상품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과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금소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 및 제12조까지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 ③ 임직원은 제②항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 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 4 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 1 장 투자자정보

####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 ⑤ 임직원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

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별지 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 제 2 장 투자권유

### 제10조(투자권유 절차)

- ①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 3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2호]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④ 만일,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별지 2호]
- ⑤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과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

다.

### 제11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 ①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 3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5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가)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3) 신탁계약
        - (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나)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5.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금융소비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7.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8.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10.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11.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④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나.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 권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설명의무

#### 제13조(설명 의무)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으며, 특히 65세이상 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 취약한 금융투자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자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 여부를 [별지 1호] 투자자정보확인서의 <추가 설명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

니 된다.

- ④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별지 4호]
  1.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 ⑤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⑦ 임직원등은 제6항의 경우 고객에게 교부하는 설명서 등 각종서류를 활용하여 판매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 5 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제14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①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표 2호]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 가.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 나.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③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 제 6 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 제15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 ①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



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 ②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청약의 철회)

- ①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 등(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서면 등’이라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금소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금소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①-1 “투자성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이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만 해당),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비금전신탁을 말한다.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금전 등’이라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2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①-3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②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회사는 투자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②-1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금전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2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금전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④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은행의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 제17조 위법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 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나.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금소법 제47조, 금소법시행령 제38조

② 투자자가 1)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

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23조, 금소법 제47조, 금소법시행령 제38조

- ③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라.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마.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

☞ 금소법 제47조, 금소법시행령 제38조, 금소법감독규정 제31조

- ④ 회사는 ②, ③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8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①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제19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①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나.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다.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라.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 ②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증권시장 등에서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부당한 권유 금지

1.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

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7.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0.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

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 제21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제22조(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①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의 경우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2.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3.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4.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23조(점검)** 회사는 투자권유준칙의 적정성 및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준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24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 ①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법 제60조, 영 제62조제1항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및 별표 12
-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28조 및 금소법시행령 제26조
- ③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제3항
- ④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개인)

- 본 확인서는 당사가 고객님의 투자목적, 투자 예정기간, 투자자산의 비중, 투자경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및 투자손실 감내수준 등을 감안하여 고객님의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고객님의 투자자정보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해서는 본 확인서를 성실히 기재하여 당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님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인 고객님의 파생상품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권유 희망여부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 희망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 불원	<input type="radio"/> 고객정보 제공 <input type="radio"/> 고객정보 미제공
기존정보 변경여부	<input type="checkbox"/> 기존정보와 동일	<input type="checkbox"/> 정보 변경

질문항목 (8개)	답변선택	배점
[연령 등] 1. 고객님의 연령 및 해당 사항에 체크해주시시오. (중복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19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20세 ~ 40세 <input type="checkbox"/> 41세 ~ 50세 <input type="checkbox"/> 51세 ~ 64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65세 이상	1 3 5 4 2
	<input type="checkbox"/> 은퇴자 <input type="checkbox"/> 주부	
[투자자금의 목적] 2. 고객님의 투자자금의 목적은 어디에 해당하니까?	<input type="checkbox"/> 은퇴(노후)자금 <input type="checkbox"/> 주택자금 <input type="checkbox"/> 결혼자금 <input type="checkbox"/> 교육자금 <input type="checkbox"/> 여유자금	1 2 3 5 15
[투자기간] 3. 고객님의 투자예정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하 <input type="checkbox"/> 6개월 초과 ~ 1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1년 초과 ~ 2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2년 초과 ~ 3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3년 초과	1 2 3 5 10
[안전자산의 비중] 4. 고객님의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등 제외) 중 예금 등 안전자산 비중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90% 이상 <input type="checkbox"/> 90% 미만 ~ 80% 이상 <input type="checkbox"/> 80% 미만 ~ 70% 이상 <input type="checkbox"/> 70% 미만 ~ 60% 이상 <input type="checkbox"/> 60% 미만	2 4 6 8 10
[투자경험] 5. 고객님의 투자해 보신 금융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A등급 이상)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1 5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중간인(BBB등급 이상) 회사채, 원금일부보장 ELS, 혼합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투기등급) 회사채, 주식, 원금 비보장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10 15 20

6. 고객님의 금융상품투자 이해수준은 어느 정도 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낮은 수준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0
	<input type="checkbox"/> 낮은 수준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8
	<input type="checkbox"/> 높은 수준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14
	<input type="checkbox"/> 매우 높은 수준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20
7.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 감내하실 수 있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	0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다.	8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14
	<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20
8. 고객님의 과생상품, 과생결합증권 또는 과생상품 투자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투자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투자기간 (            년            월)	

###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고객(본인) 성명	서명/인	작성일	년	월	일
대리인성명(대리인거래시)	서명/인	본인과의 관계			
영업점		상담직원			서명/인

------(이하 사항은 상품 설명을 받은 후 작성하는 란입니다)-----

### <추가 설명확인서>

본인은 금융투자상품 가입과 관련하여 원금손실 가능성, 손실가능 범위, 중도해지 시의 불이익, 금융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충분히 ( 설명 듣고 ), ( 이해 하였음 )을 확인합니다.

고객(본인) 성명	서명/인	작성일	년	월	일
대리인성명(대리인거래시)	서명/인	본인과의 관계			
영업점		상담직원			서명/인

※ 추가 설명확인서는 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고객님께 받는 양식입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법인)

- 본 확인서는 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 및 소득상황,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지식,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감안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서류입니다.
- 고객께서 회사로부터 고객의 투자정보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성실히 기재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인 고객님의 파생상품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권유 희망여부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 희망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 불원	<input type="radio"/> 고객정보 제공 <input type="radio"/> 고객정보 미제공
기존정보 변경여부	<input type="checkbox"/> 기존정보와 동일	<input type="checkbox"/> 정보 변경

질문항목 (8개)	답변선택	배점
1. 고객(법인)님의 자본금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총자본금기준)	<input type="checkbox"/> 10억 미만	2
	<input type="checkbox"/> 10억 ~ 50 억	4
	<input type="checkbox"/> 50억 ~ 100억	6
	<input type="checkbox"/> 100억 ~ 200억	10
	<input type="checkbox"/> 200억 이상	12
2. 고객님의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내	2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 1년 이내	4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2년 이내	8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 3년 이내	12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16
3.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 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상품은 어느 것입니까?(중복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2 4 8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 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12 16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16
	<input type="checkbox"/> 매우 낮은 수준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2
4. 고객님의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낮은 수준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4
	<input type="checkbox"/> 높은 수준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8
	<input type="checkbox"/> 매우 높은 수준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12
	<input type="checkbox"/> 매우 높은 수준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12

5. 고객님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고객님의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등을 제외)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input type="checkbox"/> 10% 이하 <input type="checkbox"/> 10% 초과 ~ 20% 이내 <input type="checkbox"/> 20% 초과 ~ 30% 이내 <input type="checkbox"/> 30% 초과 ~ 40% 이내 <input type="checkbox"/> 40% 초과	0 4 8 12 16
6. 고객(법인)께서는 최근 5년간 몇 번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셨습니다(손익계산서기준)?	<input type="checkbox"/> 1회 이하 <input type="checkbox"/> 2회 ~ 3회 <input type="checkbox"/> 3회 초과	2 6 10
7.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 중 고객님이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0 6 12 18
8. 고객님의께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 투자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투자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투자기간 (            년            월)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고객(본인) 성명	서명/인	작성일	년    월    일
대리인성명(대리인거래시)	서명/인	본인과의 관계	
영업점		상담직원	서명/인

※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작성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신규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별지4

##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 )
투자자 성향	( )

☞ 괄호안 부분은 자필기재(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 기재)

### ※ 금융투자상품별 적합한 투자자성향표

투자자성향	공격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상품위험도	매우높은위험이하 상품	다소높은위험이하 상품	보통위험이하 상품	낮은위험이하 상품	매우낮은위험이하 상품

-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특히,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파생상품등 거래 확인	
<p>귀사가 파악한 본인의 투자성향이 ( )등급임을 고지 받았으며,          본인의 투자성향 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귀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고자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p>			
고객(본인) 성명	서명/인	작성일	년 월 일
대리인성명(대리인거래시)	서명/인	본인과의 관계	

<별지 3호>

## 투자권유 불원 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파생상품등 거래희망시에는 체크불가
<p>■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 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p> <p>■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p>	

## 상품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 확인란

1.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설명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미교부)
2.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 손실 가능성 (예금자 보호법 적용대상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 듣고 이해하였음 ).

\* 괄호 안은 고객 자필기재

##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본 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회사는 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 및 영업점 규모, 고객 분포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고령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절차가 수립될 수 있도록 회사의 사정에 맞게 세부내용을 수정·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또한,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 2. 고령투자자의 정의

- 회사는 70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합니다.

### 3.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 (1)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 회사는 전 영업점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숙지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담창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2) 본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 회사는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본사 내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합니다.

## **(3)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합니다.

- ▶ 일반적으로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구조화증권 등을 들 수 있음
  - \* (투자권유 유의상품 예시)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구조화증권, 조건부 자본증권, 후순위증권 및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등
- ▶ 일반적으로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되어 빈번히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더라도 상품이 널리 주지되어 있고 시시각각 가격변동에 따른 거래의 필요성도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상장된 상품도 빈번히 거래되지 않는 상품(예 : 상장된 깊은 외가격 옵션, 구조화증권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4)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 확인**

-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지점장, 준법감시담당자 등)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

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관리직 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확인 필요

- 최근 투자자 정보 변경여부(ex. 근황 문의)
- 투자자금의 성격(ex. 생계자금 해당여부)
-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ex. 부적합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변경 여부)
-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여부(손실가능성, 상품의 기본적 구조 이해 여부)
- 사리분별능력의 현저한 변화 유무(ex. 말투, 기억수준 등 고려)

▶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판단되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직 직원이 추가로 설명한 후 고객의 투자 의사 재확인하여 판매 가능

▶ 관리직 직원이 자주 접촉하여, 고객의 건강상태, 투자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확인절차의 완화 적용 가능

- 예를 들어,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반복적으로 투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3~4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다만, 이러한 사전 확인절차의 완화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접촉 기록 및 특이사항 등을 기록·유지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 **(5) 상품 개발·판매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만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합니다.

▶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른 상품개발 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해 고령투자자에 관한 위험요인 점검항목을 추가\* 점검

\* 예) 고령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고령투자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 회사는 다른 회사가 개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을 살펴보고,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4.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 **(1)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내규 마련 및 교육 강화**

- 회사는 고령투자자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해야 합니다.
- 회사는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내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2) 내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 회사는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 **(3)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함
- ▶ 실무적으로는 창구에서 고객이 녹취전화로 조력자에게 직접 전화하도록 하여 동의내용을 녹취해두는 것이 바람직

### **(4) 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5.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 **(1)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 자제**

-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과 회사가 투자권유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고객이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판매 정책에 따라 이의 판매를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 **(2) 조력자와의 상담(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가족 등 조력자와 함께 방문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고객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 고객이 가족 등의 조력을 받는 경우 조력자로부터 설명을 같이 들었다는 서명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  
\*서명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별도 양식을 만들 필요는 없으며, 상품가입신청서 상의 본인 서명 옆에 조력자의 서명을 받아두면 될 것임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거나 관리직 직원의 동석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초고령투자자에게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비대면 방식의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초고령투자자에게 충분한 투자숙려기간(2일 이상)을 부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3) 사후모니터링 강화**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투자금액 규모에 따라 해피콜 대상을 내규로 축소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초고령자에 대한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시에는 반드시 실시
- ▶ 다만, 고객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거나 관리직 직원이 판매행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 확인을 한 경우(“3.(4)” 또는 “5.(2)”)에는 해피콜을 생략 가능

## **6. 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녹화하거나 판매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이 기록·유지하는 좋습니다.

## 적합성 보고서

고객명:	계좌번호:
------	-------

### □ 투자정보 확인서 조사결과

1. 고객연령대:	2. 투자자금의 목적:
3. 투자예정기간:	4. 안전자산의 비중:
5. 투자경험:	
6. 금융상품 이해수준:	
7. 투자손실 감내수준:	
8. 파생상품 등 투자경험: (      년      월 )	

### □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권유 상품

투자성향	투자성향 특징
000 형	(예) 000 형은 .....투자성향입니다.
투자권유 상품	(예) 유화증권 제xxx회 파생결합증권

### □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

투자권유 사유	(예) 고객이 상품 선정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일부 손실 발생가능성이 있더라도 연 5% 이상의 수익 실현이 가능한 상품을 희망함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투자권유가 가능한 상품 중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 파생결합증권을 추천하였음 ※ 투자자 수요를 감안하여 해당상품을 선정한 <b>핵심적 사유</b> 를 기술
핵심 유의사항	※ 고객의 구체적 상황(재무상황,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에 따라 각 별히 유념하여야할 사항(기초자산 및 상품의 수익구조 등)이나 불이익(과표소득 증가 등)을 기재

### □ 참고사항

-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유의사항은 해당 상품의 특성 또는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의가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험내용 등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영업점	
상담직원	(인)

# 대출성 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개인)

본 확인서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일반금융소비자)를 파악하여 고객이 신청하신 대출성 상품이 적합,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내용		비고
대출용도	신용거래 [유자]	<input type="checkbox"/> 주식 매수	※ 거래하시려는 유형 <u>모든</u> 선택
	신용거래 [대주]	<input type="checkbox"/> 주식 대주	
	증권담보유자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 매수 <input type="checkbox"/> 가계 자금 <input type="checkbox"/> 법인 자금 <input type="checkbox"/> 다른 대출금 상환 등	
* 연령	만 _____ 세		※ 법인은 해당사항 없음
* 보유자산 등	(개인의 경우) <input type="radio"/> 자산 (약) _____ 원 • 연소득 : _____ 원 • 부채 : _____ 원 - 원리금 연체 여부 :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연체 중 (법인의 경우) <input type="radio"/> 자본총계 _____ 원 <input type="radio"/> 부채총계 _____ 원 <input type="radio"/> 단기 순이익 _____ 원 <input type="radio"/> 담보비율 _____ %		※ 법인은 최근 개별 재무제표 기준 작성
* 신용점수	1. 신용카드 발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발급 사실 있음 <input type="checkbox"/> 발급 사실 없음 / 발급 거절 당함 * 발급 사실 없음 체크시 2번 문항 답변 2. 신용점수 515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 법인은 해당사항 없음
변제 계획	<input type="checkbox"/> 근로 소득 <input type="checkbox"/> 임대 소득 <input type="checkbox"/> 매도 상환 <input type="checkbox"/> 사업 소득 <input type="checkbox"/> 연금 소득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득		

## ※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고객(본인) 성명	서명/인	작성일	년    월    일
대리인성명(대리인거래시)	서명/인	본인과의 관계	
영업점		상담직원	서명/인

## 대출성 상품 적정성 보고서

고객명:	계좌번호:
------	-------

### □ 투자자정보 확인서 검토 결과

개 인	1. 대출성 상품 거래의 용도 :
	2. 연령 :
	3. 보유자산 :
	4. 연간소득 :
	5. 변제 방법 :
	7. 원리금 연체 여부 :
	8. * 신용카드 발급 경험 :
	9. * 신용점수 :
	법 인
2. 자본 규모 :	
3. 당기 순손실 여부 :	
4. 원리금 연체 여부 :	
5. 변제 계획 :	
6. * 담보 비율 :	

### □ 적정성 판단 결과 및 이유

결 과	<input type="checkbox"/> 적 정 <input type="checkbox"/> 부 적 정
이 유	

### □ 참고사항

- 동 보고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계약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회사가 고객에게 알리는 경우에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될 경우 적정성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 성 일	년    월    일
영 업 점	
상 담 직 원	(인)
지 점 장	(인)



## 청약 철회 요청서

### ■ 고객 정보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청약 철회 대상

- **(투자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 되는 날로부터 **7일**(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 되는 날로부터 **14일**(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철회 대상 상품 :

투자성 상품 : ( 세부내용 기재 가능 )

대출성 상품 : ( 세부내용 기재 가능 )

1)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_\_\_\_\_년 \_\_\_\_월 \_\_\_\_일

2) 계약 체결일 :

(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_\_\_\_\_년 \_\_\_\_월 \_\_\_\_일

### ■ 주의 사항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고객은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작성일자 : \_\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 \_\_\_\_\_ (서명/인)

## <투자자성향 분류기준>

### 1. 분류 기준

#### 가. 투자자성향

-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각 질문항목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5단계로 분류한 투자자 투자성향과 매칭하여 확정

#### 나. 맞춤형 투자자성향

-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의 경우에는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각 질문항목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투자예정기간을 감안한 맞춤형 투자성향과 매칭하여 확정

### 2. 투자성향 분류

#### 가. 투자자성향

- 20점이하 : 안정형
- 20점초과 ~ 40점이하 : 안정추구형
- 40점초과 ~ 60점이하 : 위험중립형
- 60점초과 ~ 80점이하 : 적극투자형
- 80점초과 : 공격투자형

#### 나. 맞춤형 투자자성향

합산 점수	투자예정기간을 감안한 맞춤형 투자성향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20점 이하	안정형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형
20점 초과 ~ 40점 이하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40점 초과 ~ 60점 이하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60점 초과 ~ 80점 이하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80점 초과	위험중립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 <유화증권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등급/ 구분	1등급 (매우높은 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 위험)
채권	회사채 (B이하)	회사채 (BB+, BB-)	회사채 (BBB+, BBB-)	회사채 (AA-, A-)	회사채 (AA+ 이상)	국고채, 지방 채, 통안채, 보 증채, 특수채
CP	CP (C+이하)				CP(A1 이상)	발행어음 (은행/증권금 융발행)
ETF	해당운용사 상품 기준 준용					
주식	관리종목, 투자경고, 투자유의		일반국내주식			
집합 투자 증권	해당운용사 상품 기준 준용					
RP						RP
랩	일임용	자문용				

- \* 위 기준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동 기준을 참조하여 금융투자상품별 실질 내용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류
-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6단계로 분류
- \*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투자권유  
시 이를 활용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

### <적합성 판단기준>

구 분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 위험)
안 정 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